2018년 분묘보상액 단가 산정

2018. 4.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산정기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유연분묘 보상액	무연분묘 보상액
분묘이전비[1], 잡비[2] 및 이전보조비[3]의 합계액	유연분묘 이전비 및 잡비의 50% 이하

1) (**분묘이전비**) 4분판 1매, 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 (합장인 경우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 가산) 및 운구차량비
   * 석물 이전비 및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분묘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정
2) (**잡비**) 분묘이전비 산정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이전보조비**) 100만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합계	분묘이전비①		잡비 (①×30%)	이전보조비
			분판·마포·전지·제례비·노임	운구 차량비		
유연	단장	3,504,450	1,515,000	411,500	577,950	1,000,000
	합장	4,489,200	2,272,500	411,500	805,200	1,000,000
	삼합장	5,277,000	2,878,500	411,500	987,000	1,000,000
	사합장	5,867,850	3,333,000	411,500	1,123,350	1,000,000
	오합장	6,261,750	3,636,000	411,500	1,214,250	1,000,000
	육합장	6,458,700	3,787,500	411,500	1,259,700	1,000,000
	아장	2,322,750	606,000	411,500	305,250	1,000,000
무연	단장	1,107,790	757,500	94,650	255,645	-
	합장	1,600,170	1,136,250	94,650	369,270	-
	아장	516,940	303,000	94,650	119,295	-

□ 적용기준

○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업무에 적용하되, 적용시기는 **2018년도 단가 결정일로부터 2019년도 단가 결정 시**까지 적용

참고1 분묘보상액 단가 증감 내역

(단위: 원)

구분	유연단장	유연합장	무연단장	무연합장	비고
'16년도	3,354,300	4,263,970	1,032,720	1,487,550	
'17년도	3,405,650	4,341,000	1,058,390	1,526,070	
'18년도	3,504,450	4,489,200	1,107,790	1,600,170	
증감	98,800	148,200	49,400	74,100	

참고2 2018년 지방국토관리청 분묘보상액 집행기준

(단위: 원)

구분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
유연단장	**3,466,490**	**3,341,950**	**3,180,321**	**3,282,150**	**3,504,450**
분묘이전비(a)	1,897,300	1,801,500	1,677,170	1,755,500	1,926,500
4분판 1매	10,500	10,500	8,900	10,000	10,250
마포 24미터	252,000	270,000	213,600	237,500	249,000
전지 5권	20,500	22,000	17,500	19,000	20,250
제례비	451,800	390,000	378,200	389,000	476,000
노임 5인분	754,500	739,000	701,970	746,500	759,500
운구차량비	408,000	370,000	357,000	353,500	411,500
잡비(a×0.3)	569,190	540,450	503,151	526,650	577,950
이전보조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무연단장	**1,090,000**	**1,060,000**	**980,000**	**1,029,470**	**1,107,790**
유연 대비 비율	50%	50%	50%	50%	50%
운구차량비	96,900	100,000	91,800	90,900	94,650